

공 고 문

문화재청공고 제2023 - 411호

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 문화재청 고시」의 일괄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5일

문 화 재 청 장

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 문화재청 고시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목적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(23.5.16.)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23.3.21.)의 제정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(23.8.8.)에 따라, 법률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(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)를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법률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, 용어 등 변경
 -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제명 변경
 - 문화재→국가유산/문화유산, 무형문화재→무형유산, 매장문화재→매장유산, 문화재수리→국가유산수리 등
- 오탈자 등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(국가유산정책기획단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양식

(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)

제정안	수정의견	사유

○ 의견 제출방법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기관, 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.

○ 연 락 처

- 담당자 : 노승연 주무관
- 전 화 : 042-481-3195
- 이메일 : tasit@korea.kr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
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

붙임 1. 문화재청 고시 22개 일괄개정안 1부.

2.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 문화재청고시」 개정전문(안) 각1부. 끝.